



행위허가(신고) 전체 내용

공동주택	구분		행위 내용			
	당초					
	변경					
부대시설	시설 종류		설치 현황	단지 내 현황	단지 외 현황	
		당초				
		변경				
		당초				
		변경				
		당초				
변경						
분양시설	시설 종류		주 용도	면적(㎡)	개소	그 밖의 현황
		당초				
		변경				
		당초				
		변경				
		당초				
변경						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 
특별자치도지사  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감리자의 감리의견서(「건축법」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시공자의 공사확인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



Ⅲ. 집합건축물 전용/공용 면적표

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
구분 기호

전용/공용	주/부	층 구분	구 조	용 도	면 적(m <sup>2</sup> )

구분 기호

전용/공용	주/부	층 구분	구 조	용 도	면 적(m <sup>2</sup> )

구분 기호

전용/공용	주/부	층 구분	구 조	용 도	면 적(m <sup>2</sup> )

### 작성방법

1.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.
2.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.
3.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.
4. 전용/공용부분의 구조·용도·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[예: 아파트(24A, 24B, 32A, 32B 등), 상가(A, B, C, D 또는 101, 102, 201, 202 등)].
5.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.  
(다만,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"복층하층"으로, 윗층은 "복층상층"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)  
- 공용부분인 경우: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"각 층"으로,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.
6. 주택단지를 분할·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I~VII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, VIII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
### 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